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중재위원회를
소개합니다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 397-3114 FAX. (02) 397-3029
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중재위원회를
소개합니다



CONTENTS

05 언론중재위원회 개요

-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근거 및 기능
- 언론중재위원회 연혁
- 언론중재위원회 미션과 비전

13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 조직도
- 위원회
- 사무처

19 언론중재위원회 주요 업무

- 언론분쟁 관련 상담
- 언론분쟁 조정 및 중재
- 시정권고심의
- 선거기사심의
-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
- 언론법제 학술 연구



· 의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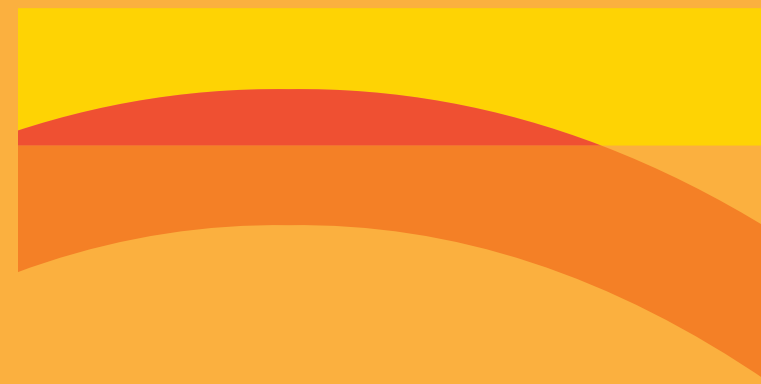
위원회의 CI는 다리와 천칭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조정'과 '중재'의 '자'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며 위원회 역할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공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색상 ·

CI의 색상은 노랑, 주황, 빨강 등의 따뜻한 느낌의 색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원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고 타입은 청색 계열을 사용함으로써 공평하고 신뢰를 주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개요



01



01 개요

| 설립 근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 주요 기능 및 역할

- 언론(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의 보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합니다(조정·중재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02 연혁

- 1981. 03. 31.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1987. 11. 28.
중재위원 증원 및 사무처 승격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0. 02. 1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공직선거법 개정)



- 2005. 07. 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 03. 05.
코로나 전담 중재부 지정 (서울 5중재부)
- 2020. 11. 02.
언론법제 전문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등재지 선정
- 2021. 03. 30.
40주년 기념행사

1980s

2000s

2020s

1990s



2010s



- 1995. 12. 30.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중재결정권 부여)

- 2001. 03. 30.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 2005. 01. 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인터넷 신문 조정대상 포함
- 구술 및 전자우편에 의한 신청 도입 등

- 2009. 02. 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조정대상
매체 포함

- 2010. 01. 25.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 보궐선거 경우 포함)
- 2011. 04. 11.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2014. 11. 12~13.
국제컨퍼런스
- 주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자유와 새로운 지평
- 2015. 11. 30.
언론법제 전문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창간호 발행



03 미션과 비전

미션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로 국민 행복에 기여



비전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한 분쟁조정 전문기관

핵심가치

공정과 신속

소통

전문성

혁신

전략과제

준사법
독립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신뢰받는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미디어법제
연구 및
정책기능 확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수립 및
성장기반 구축



사무처 미션

위원회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핵심가치 실천

실천과제

PROFESSIONAL

인적 자원의
전문역량 강화

ACTIVE

적극적 제도개선 및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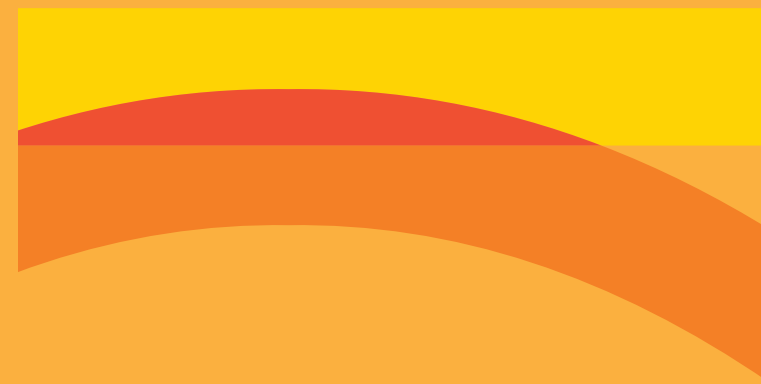
COLLABORATIVE

상호 협력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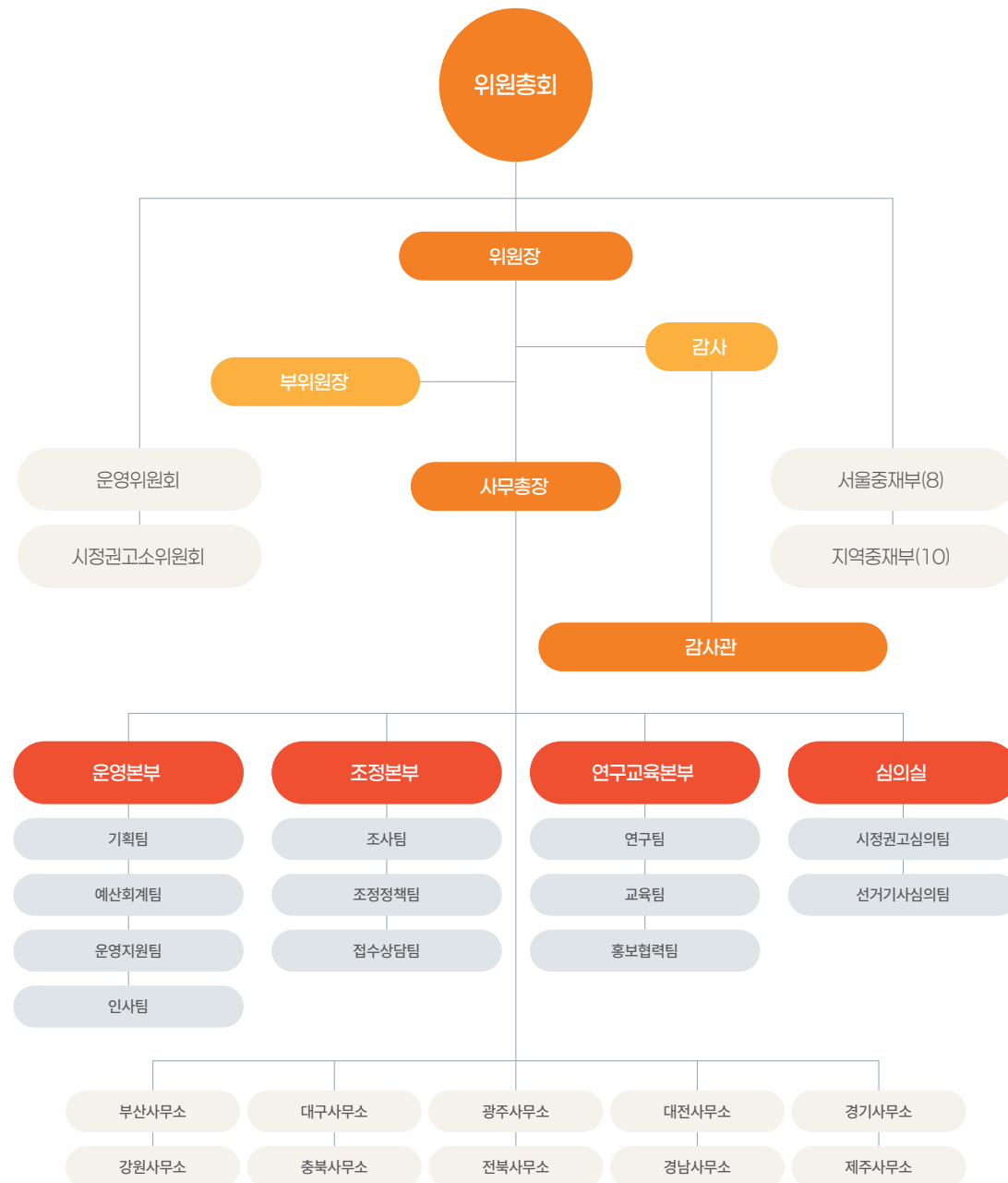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이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심의 등의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와
일반 직원이 '위원회'를 지원하고 각종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2

01 조직도



02 위원회

-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2명 및 감사 2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재위원은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직 언론인, 언론학 및 법학 교수 등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중재위원은 전국 18개(서울 8개, 광역시 및 도 10개) 중재부에 소속되어 언론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합니다. 각 중재부는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누구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중재부는 언론분쟁 당사자들의 입장과 의견, 주장 등을 청취하고, 해당 언론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 또는 조언하거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언론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중재위원 가운데 선출된 7명은 언론보도로 인한 각종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권고'하는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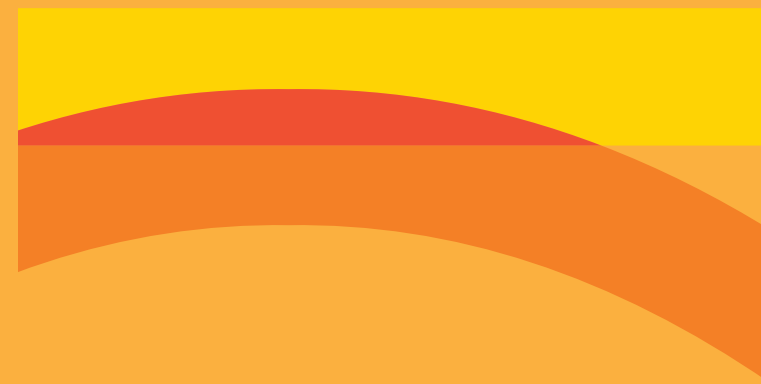
03 사무처

사무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각종 법정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무처는 중재부의 조정·중재 업무를 지원하며, 언론분쟁 관련 전문 상담, 언론법제와 언론조정중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물 발간 및 토론회 등 학술 행사 개최, 위원회 활동 및 사업 홍보, 언론인·예비법조인·학생·일반인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재부	위치	관할구역
서울제1~8중재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일부지역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서울 관할구역 제외)
강원중재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충북중재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전북중재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경남중재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제주중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언론중재위원회 주요 업무



03

01 언론분쟁 관련 전문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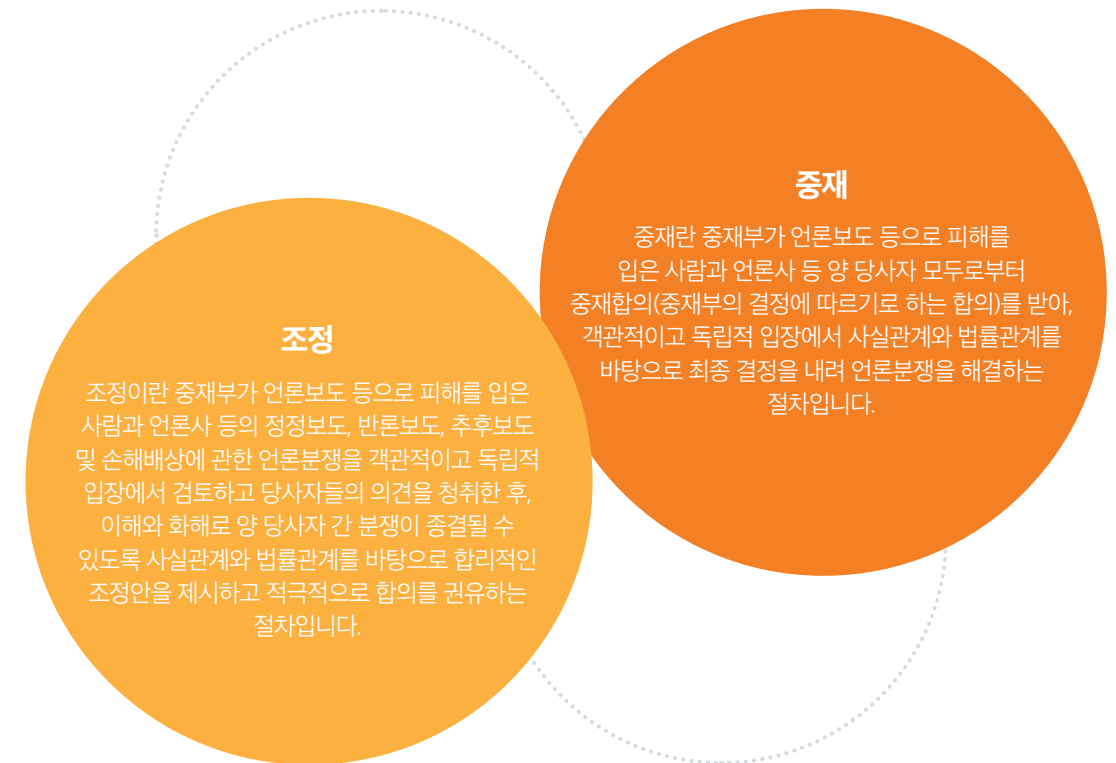


- 숙련된 전문 상담원이 언론분쟁 관련 전반에 대해 원스톱(one-stop)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전문 상담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용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 상담원을 통해 언론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언론조정·중재 절차 전반(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은 무료이며, 위원회 직접 방문, 유선전화, 이메일이나 누리집 내의 1:1 문의 등을 통해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론 피해 상담

방문: 서울사무처(프레스센터15F 접수상담팀) 및 지역사무소
대표전화: (02)397-3000
이메일: counsel@pac.or.kr
누리집: <https://www.pac.or.kr>

02 언론분쟁 조정 및 중재



-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복잡한 법원 재판 절차에 비해, 어떠한 비용 없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언론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언론조정·중재제도'는 당사자의 입장과 주장을 언론분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중재부가 충분히 청취하고 당사자 간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여 언론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인 만큼, 당사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론조정·중재 신청요건 및 청구의 종류

| 신청 대상 매체

신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인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공공기관,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보도청구는 형사 절차가 무죄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무죄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의미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언론사의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보도는 해당하지 않음

| 청구의 종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각 청구들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예,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 조정절차 중에 청구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① 정정보도청구

언론보도 등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보도를 한 언론사 스스로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 기사를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정보도문의 예

본지는 지난 5월 5일자 1면 <동결가공식품에 대장균> 제하의 기사에서 “A 주식회사에서 제조 및 판매한 동결가공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 주식회사에서 제조 및 판매한 동결가공식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② 반론보도청구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론보도문의 예

본지는 지난 5월 5일자 1면 <동결가공식품에 대장균> 제하의 기사에서 “A 주식회사에서 제조 및 판매한 동결가공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주식회사는 해당 동결가공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가공제품 기준치에 미달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③ 추후보도청구

언론사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이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언론사 등에 이 사실(무죄 또는 무혐의 받은 사실)을 보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추후보도문의 예

본지는 지난 5월 5일자 1면 <A씨 음주운전> 제하의 기사에서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④ 손해배상청구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손해배상합의문의 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분쟁 해결절차



※ 정정·반론·추후·손배 청구 모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언론사에 직접 요구하거나,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조정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 언론조정신청 방법

① 서면에 의한 신청

- 언론조정신청서 양식*에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대상 매체 및 보도 일시 등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세한 이유와 요구하는 보도문 및 손해배상액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언론조정신청서 제출 시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조정대상기사 본문을, 방송의 경우, 조정대상보도 녹음·녹화물과 녹취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인 경우, 해당 기사의 URL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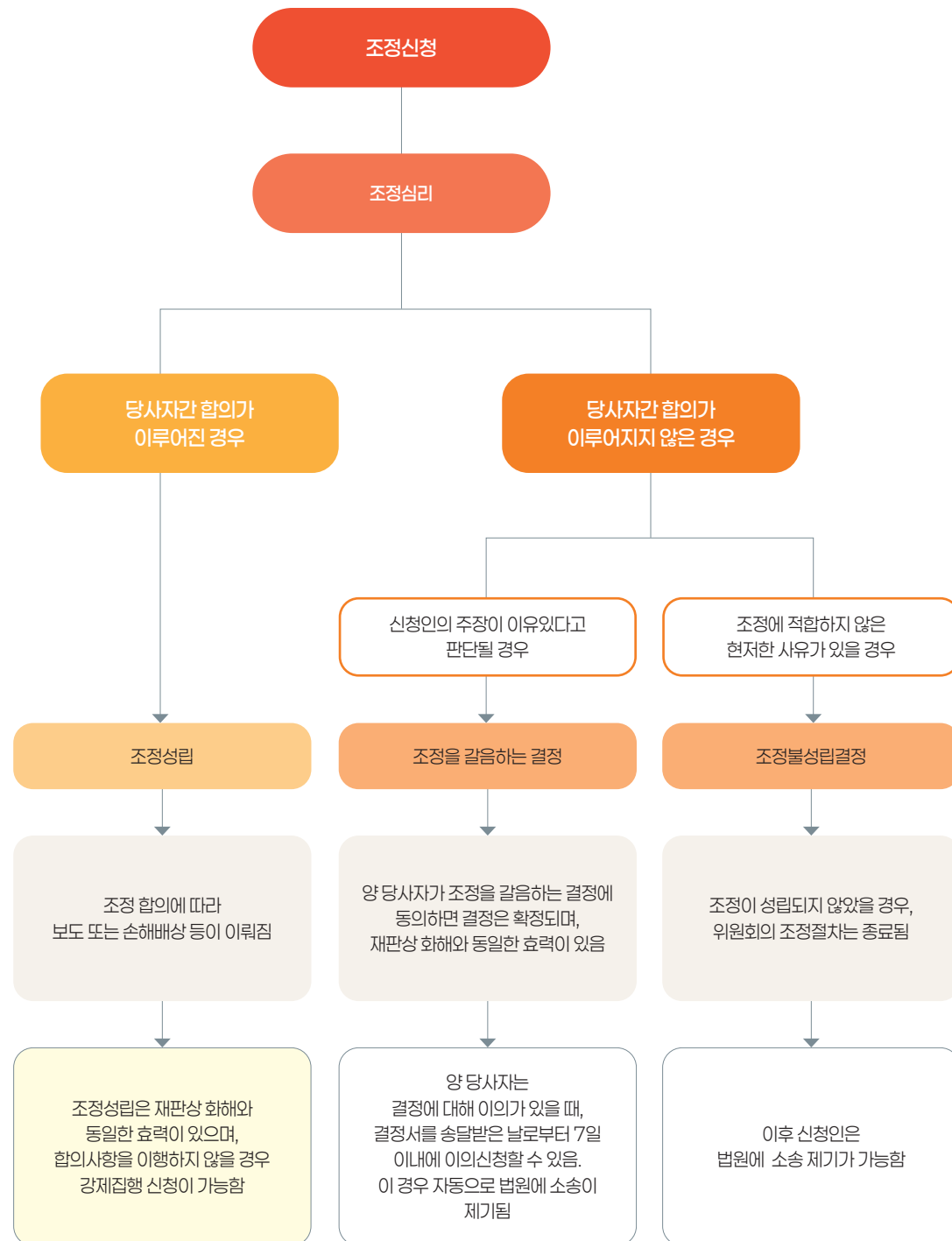
- 위원회 누리집(<https://www.pac.or.kr>)에 접속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내의 언론피해구제절차>조정신청방법 메뉴에서 '전자신청'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안내에 따라 언론조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상담 및 접수 전용 이메일(counsel@pac.or.kr)을 통해서도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구술에 의한 신청

- 위원회 전문 상담 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진술하여 언론조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론조정 및 중재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 누리집(<https://www.pac.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과 중재의 신청서 양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흐름도



-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언론사 등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 조정기일에 신청인,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심리가 열립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은 당사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심리에 출석합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신청취지대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조정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사전에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심리석상에서 중재부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 조정신청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완료됩니다.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 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언론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효력

① 조정성립

- 양 당사자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 조정성립이 된 이후에 언론사등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을 통해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합의사항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 당사자 간의 조정성립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는 담당중재부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권조정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조정성립과 마찬가지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직권조정결정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인 언론사 등은 피고가 됩니다.

③ 조정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당사자 간의 조정성립이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지면 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이후 신청인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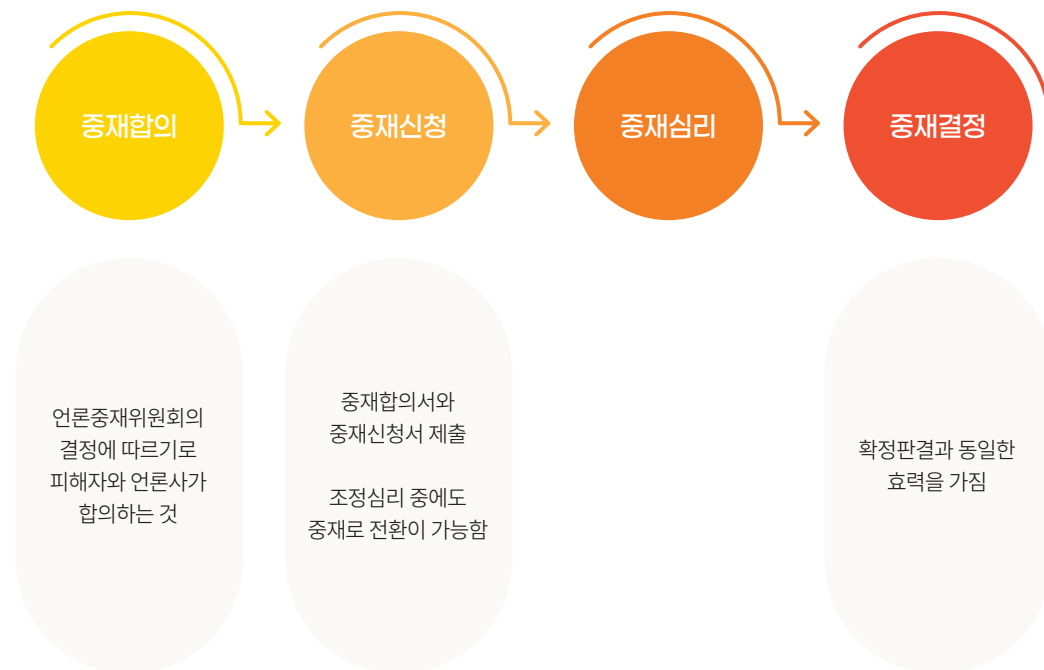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중재부가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 등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⑤ 각하

-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서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중재부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효력

- 중재신청을 하려면 먼저 신청인과 언론사 등(피신청인) 사이에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면(중재합의서)을 언론중재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 등은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보도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언론사 등이 그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신청 요건(신청인자격, 신청 대상 매체, 신청 기간 등)은 조정절차와 동일합니다.



03 시정권고

| 개인적, 사회적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7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개인이나 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시정권고소위원회는 「헌법」을 비롯하여 「형법」, 「가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통신비밀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정권고 결정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시정권고 심의의 대상이 되는 법익 침해 보도로는 사생활 공개 / 명예훼손 / 범죄 관련자(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목격자 등)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사건 관련자 신원 공개/인증, 국적, 지역,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편견적 또는 차별적·경멸적 표현 / 마약 및 약물 관련 상세 보도(구체적인 용법 및 용량 기재 등) / 자살 관련 상세 보도(장소 공개, 자살 방법 등) 등이 있습니다.
-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시정권고 결정의 전달과 함께 법익 침해의 추가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사가 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안내하며 시정을 권고합니다. 시정권고는 권고적 조치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04 선거기사심의

|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거나 후보자가 시정을 요구한 선거기사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정정·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또는 주의·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또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나 정당의 반론보도청구를 언론사가 거부하여 그 청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합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05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과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 언론사,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언론법제 및 언론피해구제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다양한 언론조정 사례 및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격권의 유형, 언론분쟁 사례와 해결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 등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 10명 이상의 단체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위원회 내방 및 출장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② 연수프로그램

언론인, 예비 법조인, 대학생,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과 함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맞춤형 강의를 제공합니다.

- 언론인 전문 연수: 언론분쟁 예방을 위하여 취재·보도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저널리즘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역 언론인 워크숍: 언론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언론인 대상 교육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예비 법조인 연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대학생(예비 언론인) 연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과 함께 현직 언론인 등으로부터 미디어 현장에 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청소년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강의, 견학 등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맞춤형 위탁 연수: 기관 및 단체 등의 위탁을 받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일반인 연수: 위원회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언론피해구제 교육과 함께 미디어 관련 외부 초빙강사 교육을 제공합니다.
-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 정당(하부조직 포함), (예비)후보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 선거기사 심의·의결 절차와 심의기준 및 주요 사례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③ 모의조정대회를 개최합니다.

-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원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고자 2021년부터 연 1회 모의조정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언론조정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은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대회는 언론분쟁 사건을 주제로 한 모의조정 시나리오 심사, 모의조정 경연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신청 및 문의

교육신청: 위원회 누리집(<https://pac.or.kr>) >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문의: 02-397-3062





06 언론법제 학술 연구

|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중재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학술연구 및 지원활동 실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중재제도 분야 연구 활성화 및 학술 진흥, 연구지원을 위해 각종 학술전문서적 발간, 학술토론회 개최, 자료실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발간하는 다양한 학술자료는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학술전문서적 기획·발간

- 언론법제,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조정중재제도 등에 관한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창구인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을 통해 언론법제 관련 분야 학술연구 활성화 및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연 3회 발간).
- 계간 <언론중재> 기획 및 발간을 통해 언론법제 관련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이슈,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연 4회 발간).
- 한 해 동안의 언론관련판결들을 수집·분석·정리한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내 언론관련 소송의 경향 및 적용법리,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연 1회 발간).
-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해외 각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 및 언론법제 관련 현황, 주요 이슈, 시사점 등을 파악, 제공하고 있습니다(연 1회 발간).

② 학술토론회 개최

- 미디어 환경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언론법제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언론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펼칩니다.

③ 학술연구자료실 운영

- 5천여 권에 이르는 장서와 각종 전문 학술 간행물을 보유한 자료실 운영을 통해 언론법제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처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울사무처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 02)397-3114
상담 02)397-3000, 3010, 3100, 3110
팩스 02)397-3089

부산사무소

(482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6층
전화 051)759-7083~4
팩스 051)759-7093

대구사무소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89 대구무역회관 1402호
전화 053)763-0020~1
팩스 053)763-0242

광주사무소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0 우체국보험회관 5층
전화 062)676-0360~1
팩스 062)676-0362

대전사무소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61 대전MBC 8층
전화 042)525-0778~9
팩스 042)525-0768

경기사무소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78 경기문화재단 9층
전화 031)211-9027, 9022
팩스 031)212-0223

강원사무소

(2437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춘로20
국민연금 춘천사옥 1층
전화 033)255-2878~9
팩스 033)255-2872

충북사무소

(2862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4
엔젤변호사빌딩404호
전화 043)286-8083, 8081
팩스 043)286-8084

전북사무소

(549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276(효자동3가)
405호
전화 063)288-0010, 0981
팩스 063)288-0980

경남사무소

(515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07, 7층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03호
전화 055)263-1787, 1780
팩스 055)263-1769

제주사무소

(632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401 다모양빌딩 3층
전화 064)722-3328, 3352
팩스 064)726-3201

언론중재위원회
홍보채널 소개



누리집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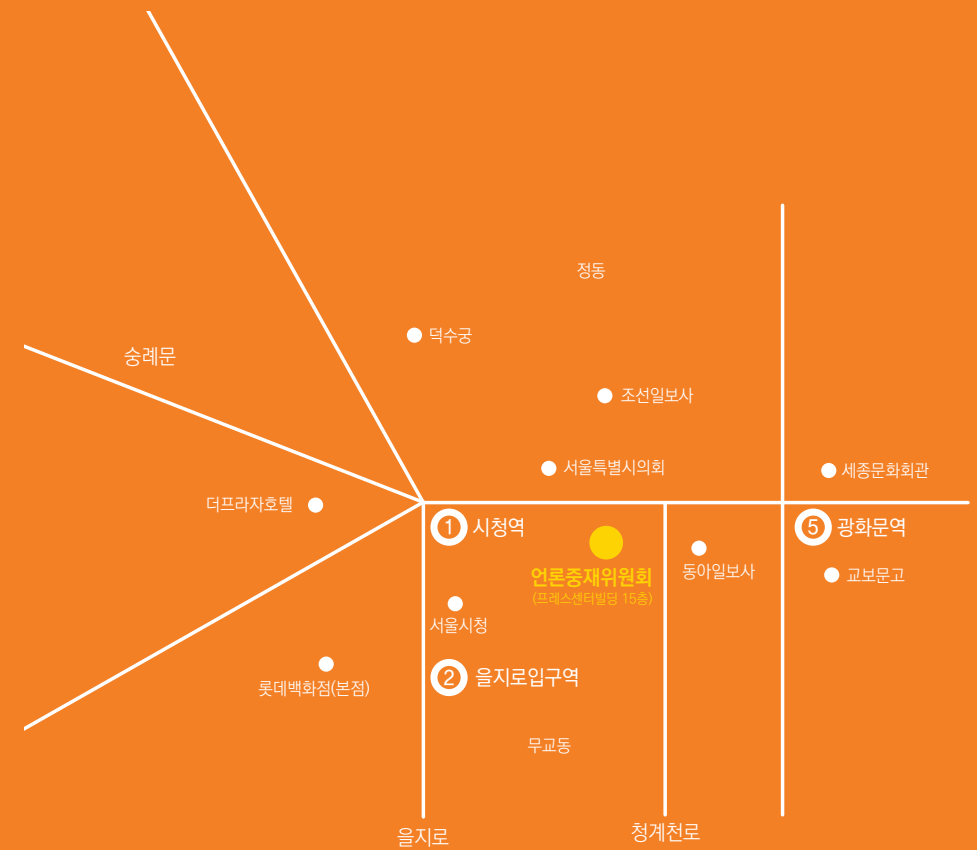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출구, 프레스센터 방면 20m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출구, 프레스센터 방면 300m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